

##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04.29]  
(일부개정) 2022.04.29 조례 제1815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일자리경제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545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·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1. 2, 2022.4.29>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소상공인"이란 파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소재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. <개정 2020. 11. 2, 2022.4.29>
2. "특례보증"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.
3. "이차보전"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** ①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년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4.29>

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<개정 2022.4.29>
2.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4.29>
3.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4.29>
4.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4.29>
5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<신설 2022.4.29>

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,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**제3조의2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단,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22.4.29]

**제4조(경영안정)**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경영상담, 자문 및 교육
2. 생산제품의 홍보·마케팅 및 판로 개척
3. 상권·입지분석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특례보증)**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11. 2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.

④ <삭제 2020. 11. 2>

**제6조(이자보전 지원)**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연 2.5퍼센트 이내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대상)**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유희, 불법도박, 사치·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 (개정 2020. 11. 2)

2. 휴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·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

3.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

③ 제2항제1호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특례보증 지원에 한하며 이차보전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 (신설 2020. 11. 2)

**제8조(지원방법)**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.

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.

**제9조(협약이행 사항 통보 등)**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(개정 2020. 11. 2)

**제10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창업,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차지원 사무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·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1조(사후관리)**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그 자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차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2조(위원회의 설치 등)**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
2. 지원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소상공인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11. 2)

1.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
2. 금융기관의 임직원

3.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
4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3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14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,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해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**제15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 1.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.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
**제16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9.12.27)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9.12.27, 조례 제1543호)(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<1>~<40> 생략

<41>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<42>~<81> 생략

#### 부 칙(2020. 11. 2, 조례 제164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2022. 4. 29. 조례 제181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